

# 201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지 철 호

금년도 공정거래 정책방향의 수립에서는 예년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대통령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국정(國政) 가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정책방향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정위는 기업과 기업 간 관계에서 진입과 경쟁이 자유로운 열린 시장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한 협력관계를 확립하며, 기업과 소비자간 관계에서는 소비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 권익을 증진하는데 주력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과제로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것은 경제여건을 감안한 선택이었다. 최근 경제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물가 불안 등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촉진시책을 강화하였다.

## I. 2011년 업무 추진과제

올해 공정위는 현 정부 최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공존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시정하는 '차가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경제 참여자들 간의 '따뜻한 균형주'로서의 역할을 중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정위의 금년도 업무 추진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의 개선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집

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이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을 강화할 것이다.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극 시정하고, 시장구조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사업자에 대한 경쟁압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셋째, 소비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래의 온라인화, 융·복합 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분야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다.

넷째,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갖춘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하려는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수반한 건강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등 기업의 의식과 문화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II.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

###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부당한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공정한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태들이 잔존(殘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향상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구도가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로 이루어진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9일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집행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

다. 이번 개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기술 자료의 서면요구를 의무화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중소기업들은 거래 단절 등 보복의 우려 때문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3% 이상 인상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업을 대신하여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아울러 즉시조정제도(Fast Track)를 도입하여 원사업자와의 단가조정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속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차 이하 협력사간 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한 경우는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대금감액을 방지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탈취·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요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기술자료의 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로 전환하며,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하는 등 여러 제도들도 함께 도입하였다.

위 종합대책에는 하도급법 개정 외에 다양한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유도하여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내역을 2차 이하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발주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 통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도입 여부는 동반성장협약 평가시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계약 추정제<sup>1)</sup>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구두발주를 받은 수급사업자가 계약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 확인요청서' 표준서식을 보급하고,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칭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당한 반품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 정당성의 입증책임을 대형유통업체가 지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입법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주요 업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반품행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1) 계약서 없이 하도급 위탁을 한 경우,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가시키는 행위 등을 중점 시정하고, 지난해 백화점과 TV 홈쇼핑 분야에 보급하였던 표준거래 계약서를 올해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업태별, 상품군별로 수수료 범위를 공개하여 업체간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여 나갈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반성장문화의 조속한 정착이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건설 등 업종별로 CEO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 종합대책 등 향후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지역산업단지 순회와 중소기업 간담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다.

## (2)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 그리고 기업 행태의 세 가지 측면 모두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을 특히 어렵게 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각 부처에 분산된 하도급거래 민원 해결기능을 통합하여 법정부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협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국 12곳에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 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다수 중소기업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모든 업종의 1단계 수급사업자 위주로 한꺼번에 실시하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제조·건설업별로 순환실시하면서 2~3단계 수급사업자까지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도급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탈취·유용행위, 구두발주행위 등 핵심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법위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것이다. 그리고 법위반 후 자진시정을 하였더라도 반복적으로 법위반을 한 업체는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가 혐의가 포착되면 자진시정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기업들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 (3) 지식재산권 남용 등의 불공정행위 적극 시정

최근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행위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속성 때문에 자칫 남용되면 경쟁질서를 해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진입을 막는 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IT, 제약분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당한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sup>2)</sup>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조사·시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남용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이선스 계약과 분쟁 해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특허라이센스 계약 가이드라인’과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등을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판매망을 제공하는 플랫폼(Platform) 사업자들이 오픈마켓(Open Market)이나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 2.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추세가 해가 바뀐 뒤에도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가(油價)나 원자재 가격 상승, 구제역, 한파 등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공급부문 요인들뿐만 아니라 수요부문으로까지 파급되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물가가 불안한 시기일수록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들 또한 이러한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기 쉽다. 따라서 공정위는 불법적 가격인상을 방지하고 물가인상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민생관련품목 TF’를 구성하였다.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총 103개 품목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밀가루, 정유, 두유, 치즈, 김치, 단무지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에는 TF(Task Force) 구성 후 처음으로 두유 제조 3개사가 가격인상과 판촉 자제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른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확인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분야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분간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동향을 점검

2)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시 해당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 또는 기술을 끼워 파는 행위 등 라이선스 계약에 부당한 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한다.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인상과정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법적 가격인상 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유통구조 및 시장구조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격거품'을 초래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이다. 고착화된 독과점 시장구조와 유통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등은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가격에 거품을 생기게 하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등 총 26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LPG 및 석유수입업 등 등록요건 완화 등 20개 과제를 개선한 바 있다. 금년에도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작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생활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도 독과점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석유, 이동통신 산업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정위 자체로도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한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계통조사를 실시하여 각 단계별 제품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 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정보교류마당'을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수축산품 수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생협의 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국 255개 생협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다 수수료 등의 논란이 있는 TV 홈쇼핑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에게 가격,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사이트(T-price)를 통하여 주요 생필품 80개 품목에 대한 135개 업체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격정보공개 대상품목에 주요 생필품을 추가하여 100개 품목, 165개 업체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생필품 가격 정보를 스마트폰(Smart Phone)과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Internet Portal Site)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생필품 가격정보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격 변동이 특별히 큰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비교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부터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와 금년에

는 5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발표주기도 연 1회에서 품목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로 단축하여 실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3월에는 밀가루, 빵 등 주요 22개 생필품의 가격차를 조사하여 4월 중 발표할 계획으로, 조사결과 국내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 행태 시정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3. 소비자 권리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상조업 등록제, 선수금 50% 보전제 등을 도입하여 상조업의 건실한 관리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 납골당 등 서민생활 분야의 209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국제결혼, 이민대행 서비스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항공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의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올해도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취약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피해 구제장치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 정비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컨대, 사기나 강박(強迫) 등 민법상 인정되는 계약취소권(契約取消權)의 범위를 넘어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未)제공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계약취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별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나 법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sup>3)</sup>를 규율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 치아 임플란트(Dental implant)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소비자거래의 환경 변화에 맞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작년에 공정위는 펀드(Fund) 등 금융투자나 여신금융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약관 중 65개 약관 157개 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였고, 올해도 45개 약관 237개 조항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금융투자업 분야의 약관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금융위로부터 통보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도 심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관법 집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헬스클럽 가입계약 해지 제한이나 해지시 위약금 과다 부과조항, 노인요양 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시 사업자 책임의 포괄적 면제조항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다. 또한 연예산업, 렌터카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계약문화의 형성을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3) 사업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그 예인데, 구두설명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의 생활화로 인터넷몰이나 온라인게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이나 인터넷 사이버몰(Cyber Shopping Mall)의 경우에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는 시스템 양식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약관법 준수 모범기준」을 제정·보급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규정을 위반하여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중 5만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들과 협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 분야에서 미등록, 선수금 보전계약 미체결 업체들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검찰에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된 상조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에 대한 법준수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면서 상조업체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 감독방안의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단계 분야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적인 판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기성 상거래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다단계 판매행위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거래시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나 무료 체험을 가장하여 유료로 결제하게 하는 기만행위 등을 집중 시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

#### 4.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아무리 법집행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자사의 문화와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거나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미 설명한 세 가지 추진시책도 기업의 공정거래준수 풍토가 확립되어야만 훨씬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각 분야에서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을 여러 분야로 계속 확대 추진할 것이다. 공기업과 유통분야로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과 재협약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평적으로 확대하고, 1차 협력사와 2차 이하 협력사간 신규 협약 등으로 수직적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제조·건설·유통·공기업 등 분야별로 공정위와 대기업, 협력사 대표,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확산함으로써 동반성장협약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제약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였으며, 12월에는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업자)간 모범거래기준<sup>4)</sup>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연성규법(Soft Law)을 더욱 확대하여, 올해에는 지식재산권 분야,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 제공 관련 기준 등 분야별,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보급하여 관련 기업들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준거(準據)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내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평가우수기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Incentive)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등 CP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을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영세사업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이를 도입하여 소규모 회원사들의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최근 약 5년에 걸쳐 외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카르텔 등으로 2조 3,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현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동영상이나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적인 카르텔 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산업계의 리더(Leader)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 III. 맷음말

지금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위의 2011년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중소기업간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4) SO가 PP에게 채널 편성 대가로 런칭(Launching)비용을 요구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 편성,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과 관련하여 거래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법위반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하여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를 풀어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원가 절감수단이나 일방적인 지원대상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역량 있는 파트너로서 자기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열린 마음으로 배려와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법준수문화의 형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의 물가불안 등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쟁촉진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은 가장 늦게 받으면서도, 고(高)물가 등의 고통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現)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넘어 대·중소기업간, 기업·소비자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기업활동의 동반자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공정위는 한 세대 동안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다음 세대에도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